



## 차 례

### 공 고

고양시 공고  
제 2019-1127호

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

고양시 공고  
제 2019-1128호

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3



##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5. 7.

# 고 양 시 장

### 1. 사업의 개요

- 사업기간(예정) : 2020년 ~ 2029년

지 구 명	위 치	면 적	지구지정 제안자 명칭(성명) 및 주소
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동산동성사동용두동 원흥동행신동향동동화전동 화정동 일원	8,126,948㎡	한국토지주택공사 /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### 2. 열람기간 및 장소

열람기간	열람장소
2019년 5월 7일 ~ 2019년 5월 21일(14일간)	고양시청 도시계획과

※ 열람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### 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2019.5.7. ~ 2019.5.21. (14일간)
-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, 우편 또는 팩스 제출
- 제출장소 : 고양시청 도시계획과
  - 주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(주교동) (FAX. 031-8075-4931)
- 기타 :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,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75-3073~3075),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(☎032-890-5831, 583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4. 기 타

-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,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1) 근거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  - 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·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  - 가) 건축물의 건축 등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
    - 나) 인공 시설물의 설치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)의 설치
    - 다) 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(切土), 성토(盛土), 정지(整地), 포장(鋪裝)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
    - 라) 토석의 채취: 흙, 모래, 자갈,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(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  - 마) 토지의 분할·합병
    - 바)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: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    - 사) 죽목(竹木)을 베거나 심는 행위
  - 3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.

##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5. 7.

# 고 양 시 장

### 1. 사업의 개요

- 사업기간(예정) : 2020년 ~ 2025년

지 구 명	위 치	면 적	지구지정 제안자 명칭(성명) 및 주소
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원	415,745㎡	한국토지주택공사 /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### 2. 열람기간 및 장소

열람기간	열람장소
2019년 05월 7일 ~ 2019년 05월 21일(14일간)	고양시청 도시계획과

※ 열람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### 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2019.05.7. ~ 2019.05.21. (14일간)
-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, 우편 또는 팩스 제출
- 제출장소 : 고양시청 도시계획과
  - 주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(주교동) (FAX. 031-8075-4931)
- 기타 :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,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75-3073~3075),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(☎032-890-5831, 583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4. 기 타

-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,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1) 근거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
  - 2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·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  - 가) 건축물의 건축 등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
    - 나) 인공 시설물의 설치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)의 설치
    - 다) 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(切土), 성토(盛土), 정지(整地), 포장(鋪裝)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
    - 라) 토석의 채취: 흙, 모래, 자갈,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(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  - 마) 토지의 분할·합병
    - 바)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: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    - 사) 죽목(竹木)을 베거나 심는 행위
  - 3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.